

OECD EPC WP1 회의 결과

(정책기획과장 주환욱,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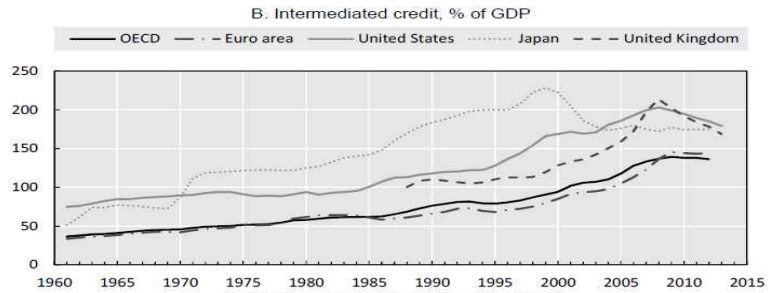
◇ '14.10.16~17일, 파리에서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산하 구조개혁작업반(WP1*)이 개최된바, 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Working Party No. 1 on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Analysis
 ** 우리측 참석 : 정책기획과장(수석대표), KDI 권규호 부연구위원 등

1. 금융과 포괄적 성장(Finance and Inclusive Growth)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 (논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이 성장과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금융부문 확대) 1970년대 이후 금융이 OECD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
 - '신용중개' 규모는 1960년대 이후 OECD 국가 평균 4배 증가, '주식시장' 규모는 1970년대 이후 3배 증가



□ (금융과 성장) 금융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과도한 규모는 경제를 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과거(~2000년초) 연구들은 금융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최근 연구(2010년~)들은 부정적 기능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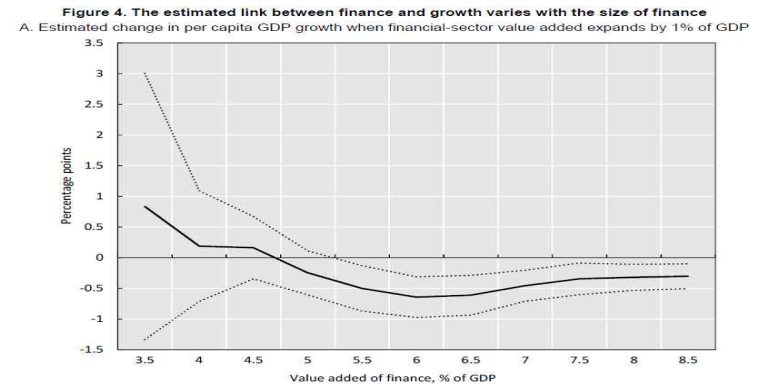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정 규모(순기능)	과다 확장(역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유 펀드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필요를 감소 ▪ 자본을 보다 생산적으로 분배 ▪ 투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 ▪ 국제무역을 촉진 ▪ 개인기업, 가계의 수요를 조절 ▪ 보험 제공, 혁신 촉진 ▪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 ▪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자본의 잘못된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에 따른 왜곡 - 대마불사에 대한 암묵적 보조 - 위험의 불확실성 ▪ 비효율적 금융중개, 대마불사, 공적 보증 등에 대한 경제적비용 확대 ▪ 고급인력 흡수 ▪ 거품 형성 ▪ 국제금융 충격에 대한 취약성 ▪ 규제포획의 위험 확대 ▪ 소득 불균형 심화

○ OECD, G20 국가의 실증적인 지표들도 동 주장을 뒷받침

- 과거 50년간 OECD 국가 대상 분석결과 GDP 대비 금융부문의 규모가 클수록 금융부문의 부가가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감소 추세(그림4)

* 금융부문의 규모가 GDP 대비 5%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증가는 경제 성장을 후퇴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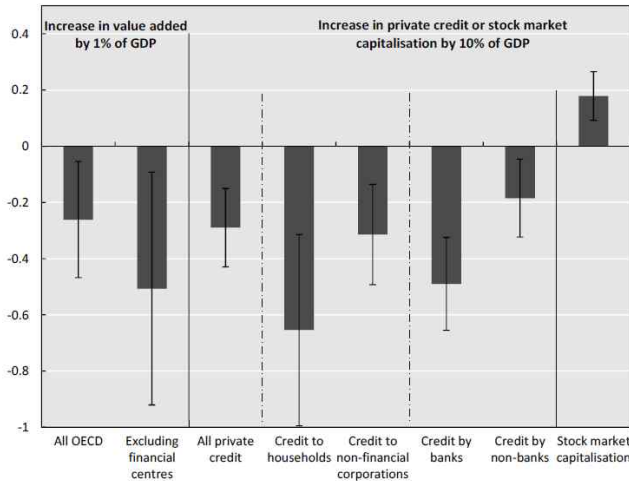
- 현재 OECD 국가들의 경우 금융분야의 부가가치, 신용중개가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GDP는 감소, 주식시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는 단계(그림 5)

⇒ 금융분야 부가가치 · 신용중개를 축소할수록, 주식시장 거래는 활성화할수록 경제는 성장

○ 금융의 질(quality)과 구조(structure)는 경제성장에 영향

- 신용중개의 부실채권이 많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
-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경제성장에 2배 부정적
- 비은행권의 대출이 은행권 대출보다 경제성장에 2배 부정적

Figure 6. Different forms of financial expansion have contrasting effects on growth at the margin
Percentage point change in real GDP per capita growth



Note: The figure shows point estimates surrounded by 90% confidence intervals. All private credit uses different data than the decompositions by borrower (Credit to households and to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by lender (Credit by banks and by non-banks) and should therefore not be viewed as a weighted average.
Source: Annex 1 and OECD (2014b).

□ (금융과 소득분배) 금융부문 확대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화

- 신용중개가 발달할수록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격차 심화를 뒷받침
- i) 신용중개가 심화되면 저소득 가계에 대한 대출이 수월

- ii) 고소득층은 신용을 더 싸고 수월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격차를 확대

⇒ 유로지역 가계 통계 실증분석 결과, ii)안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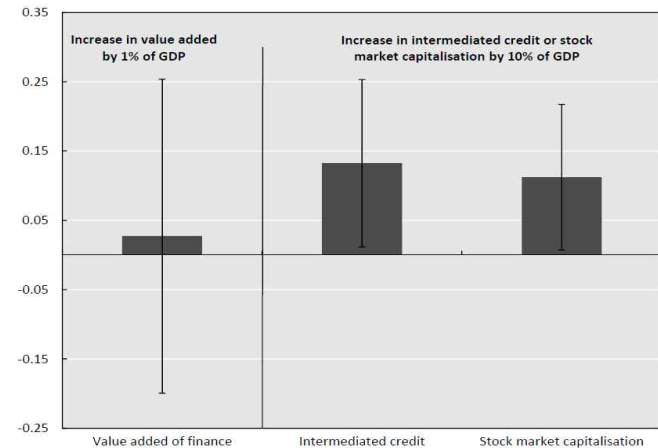
○ 금융분야는 임금격차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초래

- 금융분야 종사자는 고소득 계층에 집중 분포
- * EU 국가에서 금융권 종사자의 높은 소득은 지니계수를 0.8 상승시킴
- 금융권 종사자의 높은 임금의 원인은 ①프로필*(교육·나이·경력 등) ②임금 프리미엄**으로 설명
- * EU 가계통계 분석 결과, 금융권 종사자의 임금은 비금융권 동일 교육·경력 종사자의 임금보다 28% 높은 것으로 파악
- * 금융분야의 임금 프리미엄은 임금이 높아질수록 증가

○ 주식을 통한 부는 고소득자에게 귀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성장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 지난 30년간 OECD국가 자료 분석 결과, 신용중개와 주식시장이 확대될수록 소득불균형은 심화되는 것으로 관찰(그림10)

Figure 10. More credit intermediation and stock market financing are linked with greater income inequality
Change in Gini coefficients for disposable income, Gini points



Note: The chart shows point estimates surrounded by confidence intervals at the 90% level.
Source: Annex 2.

□ (정책 제안) 신용증개는 줄이고 주식시장은 활성화하는 조치 제안

< 금융 규제 >

- ① (은행 규제) 은행의 완충자본(capital buffer) 확대는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정부가 은행의 부실을 감당해야하는 정도를 축소
 - 대마불사 기관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줄일 필요
- ② (금융감독) 금융기관을 일일이 감독하기보다는 시스템차원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
 - 신용증개와 성장·소득분배간 역의 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DTL, LTV와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유용
- ③ (보상체계 개편) 임금 프리미엄 대신 성과금 등을 활용

< 세제 개편 >

- ① (법인세) 차입(loan)보다는 주식발행 등 자본(equity)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
- ② (주택 정책) 주택 구입·투자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가계의 대출을 늘려 성장에 저해되므로 관련 세제혜택 축소
- ③ (금융세제) 은행대출(bank loan)과 자본시장 금융(capital-market finance)에 관한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자금 흐름이 은행 대출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것
- ④ (대마불사) 금융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요구되며, 금융분야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불사에 대한 보증을 중단할 필요
 - 대마불사를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능별로 분리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결론) 건전한 금융과 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은 상충 관계가 아님

< 주요 논의 내용 >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실증 분석한 금융 규모와 경제 성장·소득분배간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
 - 금융분야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양보다 질의 문제로 단순히 규모만으로 금융과 경제성장간 관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연구·근거 필요(스웨덴·영국·프랑스 등)
 - 금융의 적절한 규모와 임계점(threshold)*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국가별로 분석해 볼 필요(스페인, 노르웨이, 터키 등)
 - * 사무국은 금융부문의 규모가 GDP 대비 5%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증가는 경제성장을 후퇴시킨다고 분석
 -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금융의 잘못된 자원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덴마크, 독일)
-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무국측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보완 사항을 제시
 -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대한 지원은 금융뿐 아니라 재정의 위험이 될 수 있어 이를 축소하는 방향에 동의(이탈리아)
 - 다만, 대마불사 해체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현실적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프랑스)
 - 소득세를 통해 금융분야 고임금에 따른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프랑스)
- 아국 역시 금융과 경제성장·소득분배간 관계는 국가별 금융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별 회원국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것을 제안
 - 금융이 양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적절한 위기 관리, 건전성 관리가 병행된다면 금융과 경제성장은 (-)의 관계가 아닐 수 있음

- 금융이 신기술·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가능
- 신용증개 기능이 발달할수록 저소득층이 보다 안전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후생에 도움을 주는 측면
- 가계부채의 무조건적 감축보다 질적 관리가 보다 중요

2. 국제적 법인세제(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 국가간 법인세 차이가 다국적기업의 수익이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쳐 국가별 재정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 * 회원국은 '13.10월 WP1에서 '국제적 법인세'에 관한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논의를 거쳐 2015년 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 * 동 프로젝트는 OECD 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연계
- 국가간 법인세 차이가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EPS*)에 미치는 영향, 수익이전을 하는 기업의 성격, 수익이전 방식, 재정에 대한 영향
 -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국가간 법인세 차이가 경제활동의 지리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수익이전이 기업의 재무구조·레버리지·위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다국적기업은 수익이전*과 조세제도의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회사조직을 구성
 - * 이전가격 조작, 고세율 국가의 지사로 부채 이동, 저세율 국가로 무형자산(지적재산권, 특허권) 이동
 - ** 성격이 혼합(hybrid)되어 있는 지사(entites)·요소(instrument)·매매(transfer)의 경우 국가별 다른 세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 존재

- 다국적 기업은 그룹 지사들을 통해 세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
 - * 그룹 평균 법정세율보다 1%p 더 높은 세율이 높은 곳의 지사 수익은 약 1% 정도 더 적게 집계
- 여러 국가에 지사를 보유한 복잡한 다국적기업일수록, R&D·무형자산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수익 이전에 수월
- 부채 이전보다 이전가격 조작이 더 주요한 수익 이전 수단
- 조세제도간 미스매치는 이중 비과세, 이중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활용
 - 이는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 초래
- 수익 이전은 법인세 수입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동시키는데, 조세제도간 미스매치는 모든 국가의 세수를 감축
 - 세원잠식과 수익이전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세수손실은 OECD와 G20 국가들의 총 법인세 수입(연간 약 1천억불)의 4.5%로 추정
 - 4.5%의 2/3는 수익 이전, 1/3은 조세제도의 미스매치에서 비롯
- 세원잠식과 수익이전(BEPS)의 결과로 거대 다국적기업의 실효 세율은 국내기업의 보다 평균 5%p 정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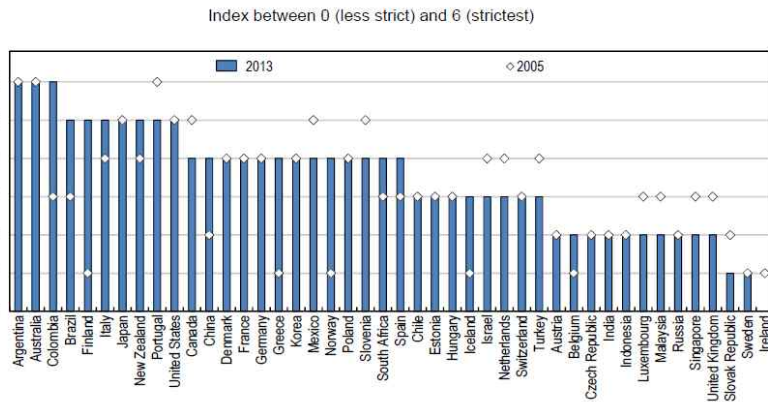
Table 1. Profit shifting and mismatches reduce the effective tax rate of MNEs
Average BEPS-induced effective tax rate differential between MNEs and comparable domestic groups
Percentage point

	Induced by:		Total
	Profit shifting	Mismatches between tax systems	
Small MNE entity (<250 employees) as compared to a small non-MNE (domestic) entity	-1.6	0.0	-1.6
Large MNE entity (250+ employees) as compared to a large non-MNE (domestic) entity	-1.6	-3.4	-5.0

□ 엄격한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rules)은 세원잠식과 수익이전을 감축

- * 이전가격 조작 금지(제3자가격 원칙), 지시간 전략적 부채이전 제한, 외국에서 발생한 다국적기업 소득 제한 규정, 배당금·이자소득·로열티에 대한 원천과세 등
- 개별 국가내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엄격함을 지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동 지수가 높을수록 수익이전의 규모는 감소(그림4)
- * 규제의 엄격성 지수가 2인 국가(인도, 인도네시아 등)보다 4인 국가(독일, 프랑스)가 수익이전의 양을 절반 이상 작을 것

Figure 4. Strictness of anti-avoidance, 2005 and 2013^{1,2}



1. The indicator takes into account three dimensions of anti-avoidanc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thin capitalisation rules and withholding taxes. Details of the methodology and assumptions are presented in Annex 1, Appendix 2.
 2. For Estonia, Slovenia, Singapore and Turkey, transfer pricing rules are from 2006 rather than 2005.

□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는 다국적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결정 및 세수에 영향

- 법인세율과 FDI는 역의 관계이며 법인세율 1%p 증가시 FDI는 3% 감소
- FDI는 실물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FDI가 법인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수익이전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큼

□ 향후 회의에서는 법인세의 국제적 차이가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 기업의 유·무형 투자, 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BEPS 방지 액션플랜이 재정위원회 WP2 및 CTP에서 기 논의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들 그룹과의 차별화된 논의 및 협업을 제안

*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 경제정책위 WP1에서는 BEPS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보다는 BEPS의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필요(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 사무국 보고서에서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이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보다 자료 보강 및 보다 정교한 분석을 요구

-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 법인세율 차이 비교, 조세회피방지 엄격성 등은 도출 근거가 보강될 필요(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 FDI에 대한 영향 법인세 이외에도 제도의 친숙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고 분리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 (벨기에, 영국, 터키 등)

- 그러한 의미에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율 1%p 증가시 FDI는 3% 감소'는 근거가 보강될 필요(스웨덴)
- 반면, 거시적으로 조세가 기업의 투자 결정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이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는 의견도 제시(스위스)

□ 아울러 BEPS 방지 액션플랜의 법적 이행과 투명성을 강조 (독일)

3. 중등교육에서 고용으로 전환(The Transition from Secondary Education to Employment) - KDI 검토 및 대응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1. 논의 배경

-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 과정은 청년층이 양질의 직업과 경력 개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본 보고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노동시장의 현황**(고용과 임금, 미스매치(mismatch), 고용과 임금·노동정책)에 대해 검토

2.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과정(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 미국과 유럽의 이행 과정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유럽에 비해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에서 청년층의 이직이 많고 실업기간이 짧아 **다이나믹한 것**이 특징
 - 유럽국가 중에서 청년층의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중이 낮고, 임시직 사이에서 이직이 많으며 **실업기간이 긴 것**으로 관찰
- 취약한 청년층의 이행 경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 정규교육을 중도 포기 혹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OECD 국가들의 정책을 검토한 결과, 정책목표를 다음 3가지로 요약
 - 진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수를 최소화
 - 학업과 업무가 조합된 교육과 훈련을 권장
 - 모든 젊은이들에게 실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음의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

- 빈곤한 학생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public interventions)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 학생이 일치할 경우 **기술 습득과 교육목표 달성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효과**
 - 또한, 잘 설계된 프로그램일 경우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와 학교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
- **경력 지도(career guidance)**
 -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upper secondary)을 대상으로 한 경력 지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
 - 노동시장에 대한 **취약한 정보력**과 단순 심리적 상담 수준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
 - **경력 지도자의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구체적이지 못한 지도
 - 한편,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지도**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
 - 노동조합이나 고용주,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 **이해관계, 우선 순위가 다른 단체를 중심으로 경력지도가 이루어짐**
 - 견습 시스템(apprenticeship system)이 잘 갖추어진 국가일지라도 **수료 후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 OECD가 권장하는 경력 지도 방침 >

- 단순 심리적 상담이 아닌 포괄적인 경력 지도와 노동시장에 대해 **잘 정리된 정보의 제공**
- 제공되고 있는 경력 지도에 대한 출처의 제공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
- 객관적인 경력 지도를 위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도**
- 경력과 지도 과정에 대한 우수한 정보를 제공
-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력 지도의 포괄적인 틀을 설정
- 경력 지도의 목표에 대한 적절한 평가

□ 견습 시스템(apprenticeship system)

- OECD 국가들의 견습 프로그램은 **제한된 범위의 산업**, 수료 후 **정식 자격증의 부재**, 회사들의 일반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투자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님
- 견습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
 -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 **다양한 연령대**의 그룹과 업종을 대상으로 구성
 - **고용주와 공공당국**, 견습생 간에 서로의 **책임을 공유**
 -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훈련
 - 광범위하고 조직화된 훈련의 수준과 역량에 대한 보장
- 유럽 국가들은 유럽 전역의 다양한 교육과 훈련 체계를 비교 가능하도록 유럽자격방안을 도입 중에 있음

< 유럽자격방안(EQF,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

-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평생교육의 유럽자격 방안' 실시 권고를 위한 제안서를 채택(2006.9.5.)
- 유럽자격방안이란 유럽 국가들 간에 공통의 언어로 자격을 배우며 EU 회원국, 기업, 개인이 유럽 전역의 다양한 교육과 훈련체계 속에서 자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임
- 유럽자격방안의 핵심은,
 - 1)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학습자가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줌)의 기준이 되는 **8가지 수준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 2) **학습의 산출에 초점**을 둬으로써 학습의 투입을 강조하는 기존 자격제도와 차별화
 - 3)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로써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성인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유럽자격방안(EQF)은 유럽 국가들 간의 학습과 근로를 위한 국가간 청년층의 이동 증대와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성장 도약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3.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 및 임금이 증가

-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이수자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평균적으로 **5% 정도 취업률이 높았으며**, 각각의 교육 단계는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음
- **대학 졸업자**의 경우 다른 직업 교육 이수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60% 정도 많은 보상을 받음**
-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들에서 **취업기회를 크게 향상시킴**
 - 비슷한 성격의 공공부문의 일시적인 고용 정책은 성과가 미미했으나, 가족이나 건강,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16세~29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교육수준, 습득한 기술의 차이와 임금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 **교육수준이 낮고 정보처리기술 습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고용, 교육, 훈련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짐
 - 교육수준 이외에도 **습득한 기술의 종류, 숙련 정도는 구직 가능성과 시간당 임금에 영향**
 - **교육수준과 습득한 기술의 종류가 노동시장 진입 시에 임금 수준에 강한 영향**을 주지만, 교육수준과 임금 간의 관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짐
 - **노동시장의 제도와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에 대한 보상이 조정되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 *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높고 임금 계약이 경직적일수록 기술에 대한 보상이 느리게 조정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고**, 동일한 기술 수준이어도 **임시직일 경우 임금이 낮았음**

<주요 논의 내용>

- 일부 회원국은 **종합적인 정책 제안이 부족함**을 지적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이 미비(뉴질랜드)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종합적인 비교분석** 결과가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보완을 제안(터키)
- 또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분석 제안
 - 현재의 높은 청년층 실업률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며 **수요측면에서의 분석 필요**(독일)
 - 체계적인 직업교육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한 분석** 요구(이탈리아)
- 많은 회원국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시
 -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 직업교육 성공의 필수요건으로 지적하며, 성공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캐나다)
 - 직업교육이 목표로 하는 중간 수준의 기술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 공급자의 대응능력**이 향후 직업교육 성과에 핵심적인 요소(미국)
 -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여 직업교육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 필요(미국, 뉴질랜드)

4. 2015년 구조개혁 우선순위(Going for Growth: Taking Stock of Reform Action and Identifying Priorities in 2015)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1. 2013년 구조개혁 평가

- 지난 2년간 OECD 국가들의 구조개혁 속도는 다소 저하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
 - * 노동생산성 관련 개혁속도는 위기 전보다 높아진 반면, 노동활동도 관련 개혁속도는 위기 전보다 저하
- 일본, 멕시코 등은 구조개혁을 강화하였으나 유로존 취약국가들의 개혁강도가 위기 직후에 비해 뚜렷하게 둔화
- 개혁속도가 둔화된 것은 개혁방안 이행에 따른 제약요인* 상존, 구조개혁 추진에 있어 정치적 부담** 등에 기인
 - * 중앙-지방정부로의 법 적용 문제, 개혁입법에 대한 소송문제, 행정 역량 부족 등
 - ** 거시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경기, 소득분배에 악영향
-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은 잠재성장률 둔화, 원자재 가격과 자본 변동의 취약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
- 노동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은 **교육개혁과 혁신 정책**을 가장 활발히 추진
 - 영국, 포르투갈은 직업교육 및 도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NEET족 감소에 적극 대응하였고, 체코는 정부 R&D 지출 효율성을 제고
- 노동활동도 제고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우선순위를 둬
 - 퇴직·장애연금 관련 개혁도 진전 달성
- 다만 임금, 일자리 보호, 실업 수당, 조세정책 관련 개혁은 미흡
- BRIICS 국가들은 금융 시장과 은행 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자리 보호, 노동시장 규제 개선 등은 미흡
 - * 인도는 은행분야의 국내와 해외간 경쟁을 촉진, 중국은 이자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

2. 2015년 구조개혁 우선순위 : 노동 활용도와 노동 생산성 제고

□ 국가간 1인당 GDP 차이는 노동생산성과 노동활용도 차이로 설명 가능

-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낮은 노동생산성이 주 원인이며, 비공식적 노동과 취약한 인프라투자 등의 문제에 직면
-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노동 활용도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다음 3가지로 그룹화 가능

- ① 북유럽(벨기에, 덴마크, 佛, 獨, 네덜란드 등): 낮은 활용도+높은 생산성
→ 짧은 노동시간이 문제, 여성 전일제 근무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 상존
- ② 남유럽(그리스, 伊,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낮은 활용도+낮은 생산성
→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근로, 미숙련근로자·청년 등의 노동시장 배제가 문제
전일제·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③ 비유럽(日, 한국, 호주, 캐나다 등): 높은 활용도+낮은 생산성
→ 서비스업 취약성(한국, 日), 지식기반자본 투자에 대한 성과 저조(캐나다)
신규기업 진입장벽 및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비효율성 상존

□ '15년 주요 구조개혁 분야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 '13년과 동일하게 유지

- 다만, 노동활용도 분야의 일부 세부 과제(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실업급여)는 '13년에 비해 더욱 강조
- BRIICS를 비롯한 非OECD 국가들은 80%의 정책 우선순위 과제들이 생산성 향상과 관련

* 상품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선, 인프라 투자 병목 해소, 반부패 제도 강화 등

3. 노동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노동시장 회복과 단기 도전과제>

- 일자리 회복이 시작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크고,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나 노동시장 참여 저조에 기인하는 측면
- 美·스페인 등은 위기의 직접 영향으로 장기실업이 크게 늘었고, 다수 국가에서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 저하로 경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화되는 양상

⇒ 소극적 노동정책(실업급여)와 적극적 정책(직업탐색지원, 카운슬링 및 훈련프로그램)을 잘 조화시켜 일자리 복귀 및 매칭 강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도전과제>

- 2010~2060년까지 OECD 국가 전체인구는 17% 증가하나 15~74세의 노동연령인구는 7% 감소 예상

*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체인구 중 노동연령인구 비중이 감소, 중국은 노동 연령인구 비중이 더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는 2050년까지는 증가 예상

⇒ 조세 및 급여 시스템, 보육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필요

<조세제도>

- 과도한 노동 관련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세원확대, 조세회피 방지 노력 등을 병행할 필요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

- 여성 노동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1)맞벌이 부부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2)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육아휴직제 실효성 제고가 특히 중요
- OECD 국가들이 보육시설 확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등 타겟팅 개선 필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양질의 보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정책대상 타겟팅 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혁(실효성 제고)

<실업급여, 사회적 보호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 장기실업 증가가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집중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이태리, 일본, 한국, 포르투갈은 사회보호 범위 확대, 카운슬링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
 - *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사회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바, 이는 노동시장 성과 부진의 악순환 야기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범위확대, 카운슬링 및 직업훈련 강화

<퇴직연금 및 장애연금 개혁>

- 연금개혁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 급증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
- 성장제고보다는 수혜범위(coverage), 소득의 충분성(adequacy),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등의 목표가 보다 중시되는 경향
- 일부 국가에서 정년연장, 고령층 실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는 있으나,
 - 노동시장에서 조기 exit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장애연금 등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일자리 보호>

- 고용에 대한 과보호는 생산성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 및 지식 기반자본 투자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해고과정 단순화 및 해고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일자리가 아닌 개인에 대한 보호 강화(실업시 소득지원, 재취업 지원 등) 병행 필요
 - 특수 법원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특수 소송과정 설립,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 등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가 긴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법제 완화
- 분쟁해결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최저임금과 임금협상 시스템>

- 최저임금의 수준은 근로자들의 생계 및 근로유인과 기업의 부담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1)연령·지역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2)독립적 기관에 최저임금 결정권한 위임, 3)비임금 노동비용 감소를 위한 요율 설정 등이 바람직
- 노동비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 단체협상시 대표성이 없는 노사까지 자동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거할 필요
- 유로존 재정취약국들이 임금유연화(임금삭감)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바, 상품시장 개혁 병행 필요

<부동산 및 토지이용 정책>

- 부동산과 토지이용 관련 제도가 잘못 설계될 경우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을 저해하므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 주택임대 규제 완화(스웨덴), 토지계획 및 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영국), 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세혜택 축소(미국) 등 필요

4.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장단기 도전과제>

- (단기) 고정투자 등 총수요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총수요 진작 노력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 해소 및 금융시스템 복원 등 구조개혁 노력 병행 필요
- (장기)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향후 선진-신흥국 모두 생산성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지식기반자본의 축적이 긴요하며, 무역뿐 아니라 R&D·혁신·조세·경쟁 등의 영역에서의 국가간 공조 강화 필요

<인적자본>

- 향후 성장의 핵심엔진은 지식이며, 이를 위한 교육 강화가 매우 중요
 -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사역량 제고, 계층·지역간 교육불평등 해소 등이 긴요하며 공공재정이 적극 뒷받침될 필요
 - 대학교육의 경우 대학자율성 강화, 교육재원의 학생부담비율 제고, 국제화 추진 등이 필요
 - 직업교육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
 - 기대수명 증대에 발맞춰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접근성 제고(교육기회상의 평등)를 병행할 필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양질의 보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정책대상 타겟팅 개선
- 평생교육 및 직업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R&D와 혁신>

- 혁신정책은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과 자본이 원활히 재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될 필요
 -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칫 기존기업에 대한 보호막으로 작동하여 신생기업의 진입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설계할 필요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혁신역량 제고 필요

<상품시장 개혁>

- 많은 국가에 있어 경제 전반의 규제부담 완화 노력이 긴요
 - 기업 진입장벽 완화*, 규제 투명성 제고, 경쟁체제 강화, 정부 통제 완화 등
 - * 소매업·전문서비스·네트워크 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진입장벽 완화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큰 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보다 균형적인 성장모델로의 전환 필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기업 진입장벽 제거 및 진입비용 축소
- 규제의 투명성 제고

<무역 및 FDI>

- 특히 신흥국의 경우 무역과 FDI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무역 및 FDI에 대한 장벽 완화

<농업·에너지보조금>

- 정부 보조금 축소를 통해 시장왜곡 완화, 친환경적 성장 유도, 재정수입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농업에 대한 보조금 감축

< 조세시스템 >

- 조세부담을 직접세 중심에서 **소비·부동산·환경 등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친화적 조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세계화 진전에 따른 자본·노동이동 확대로 **국제 조세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조세시스템 단순화, 조세회피 방지, 세원확대** 노력 필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

- 조세부담을 **개인소득세→소비·부동산·환경 관련 세금**으로 전환

< 정부지출의 효율성 >

- 세수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정지출 부담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긴요
 - 정부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정부조달 제도 개선, 정부 효율성 제고**(전자정부 확대), **의료지출 효율성·형평성 제고** 등

< 공공 인프라 투자 >

- 신흥국을 중심으로 **정부 인프라투자 활성화** 노력 필요
 - 인프라 투자 **규제정비, 규제감독기구의 투명성 확보, PPP 등 민간 부문 참여** 유도
 -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부족 해결** 필요

< 법치 확립 >

- 특히 **신흥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법치 확립**이 긴요
 - 인권 및 재산권 보호, 계약 관련 제도 확립, 정부의 부패 방지 등

< 금융규제 및 감독 >

- 신흥국의 경우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

<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국들은 대체로 사무국이 제시한 **2015년 구조개혁 우선 순위가 적절하다고** 평가
 - 장기성장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며 노동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기 은퇴를 방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벨기에)
 - 아국은 2015년 구조개혁 우선순위가 **성장친화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개혁과제 가운데 **단기성장에 기여하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음 언급
 - 아울러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금과 노동 생산성간 격차를 줄이고 **노동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제안
- 아울러 회원국 대부분이 구조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 국가별 10~14년 구조개혁(Going for Growth) 이행현황 점검하고 **이행지수를 설정**할 것을 제안(오스트리아)
 - 사무국 차원에서 회원국의 이행을 보다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 비용 절감 방안**을 연구해줄 것을 요청(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
 - G20에서는 보다 구속력 있는 구조개혁을 논의의 중으로 going for growth를 **G20과 연계**하는 방안 제안(호주, 스위스)
- 유럽 회원국들은 최근 구조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구조개혁 속도는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EU 등)

- 지난 3년간 재정위기를 겪었고 따라서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수요가 낮았으며 유럽내 디스인플레이션은 구조개혁의 비용을 상승시킨 측면(프랑스, 터키)

□ 그 밖에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심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 민간부분의 구조개혁 참여를 독려 필요(프랑스)
- 개별 국가에서 이행한 구조개혁이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포르투갈)
- 과거 10년간의 going for growth 성과를 참고하여 향후 10년 후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스위스)
- 구조개혁과 소득 불균형간 관계 논의 필요(노르웨이)
- 인구감소가 성장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논의 필요(미국)

5. 미시경제 안정에 대한 경제정책의 효과(Effects of Economic Policies on Microeconomic Stability) - KDI 검토 및 대응

< OECD 사무국 주요 내용 >

1. 논의 배경

-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후생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OECD가 제안한 성장지향적인 구조 개혁 정책이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변동성은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거시적인 변동성은 개인들에게 간접적인 시사점만을 제공
- 최근 관측되는 OECD 국가들의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가구의 가처분소득 불안정성은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국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분적으로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이전지출의 규모가 소득분배와 소득의 변동성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가구수준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님
 - 거시경제 변수보다 가구수준에서 변동성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두 변동성 사이의 상관관계도 낮음

2.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

-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시장에서 근로소득의 불안정성과 조세, 이전지출을 통해 가구의 가처분소득 불안정성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 firm-level volatility는 가계수준의 변동성에 비해 사회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본 Round에서는 구조 개혁 정책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둠

2.1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의 변동성

-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소득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worker reallocation**, **근로시간의 변동**, **시간당 임금의 변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worker reallocation의 경우 **OECD**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근로시간의 변동과 시간당 임금의 변동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 구조 개혁 정책이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위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음

<표> Link between policies and labour income volatility

	Worker reallocation	Volatility of annual hours worked	Volatility of hourly earnings
Employment protection (regular workers)	∩ *	∩ ***	∩ *
Centralisation of wage bargaining		∩ ***	∩ ***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s		∩ *	∩ *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 **		
Product market regulation		∩ **	
Credit intermediation	∩ ***	∩ ***	∩ ***

Note: The shapes indicate the estimated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stimators (rows) and volatility estimates for different aggregates of labour income volatility (columns). Volatility of annual hours worked and hourly earnings are measured with cross-sectional standard deviation (Tables 3 and 4 in Section 3 in Annex 1 show results for all available measures). Empty cells signify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are not significant at the 10% level (see Tables 3 and 4 in Section 3 in Annex 1 for detailed regression coefficients and significance levels). Stars show confidence levels for the linear and squared term: *** stands for 99%, ** for 95% and * for 90%. 1. If significance differs between the linear and squared terms, the lower level is shown.
Source: OECD calculations using CNEF, ECHP and EU-SILC and OECD statistics.

- ① **(고용보호법제(EPL) 완화) 고용보호법제의 완화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변화 이전의 고용보호 법제 수준에 영향을 받아 역 U자 형태**를 보임.
 - 엄격한 고용보호 수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나, OECD 평균수준의 고용보호 수준에서 보다 완화시키는 것은 반대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 엄격한 고용보호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체코,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이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엄격한 고용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가 **deep reform**을 실시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지 않고 **성장의 benefit**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
- ② **(Centralisation of wage bargaining 완화) 고용보호법제와 유사하게 역U자 형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③ **(실업급여 혜택의 축소) 개인의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수준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서 실업자의 위험감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때문일 수 있음
- ④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을 위한 지출 증대) 노동시장을 보다 다이나믹하게 전환시킴으로써 worker reallocation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은 감소**
- 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PMR) 완화) 근로시간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역 U자 형태**를 보임

2.2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

-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이전지출의 규모, **가구주 이외의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안정성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 작용**
 - 조세의 누진성과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불안정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반면, **이전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한 것으로 평가**
 - 누진세율은 소득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이전소득은 주로 소득수준과 연동되어 있거나 혹은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가구의 가처분 소득으로 적게 전이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높은 세율, 강한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이전지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더 많은 지출

* 스칸디나비아 국가, 네덜란드가 이에 해당

□ 반면, 가구의 가처분 소득으로 많이 전이되는 국가들은 누진성이 적은 소비세, 재산세에 좀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한국이 이 범주에 속함

3. 경제성장, 미시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소득분배

3.1 상충관계와 보완성: 구조개혁과 미시적인 불안정성

□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Going for Growth exercise(OECD 2014)에서는 논의된 성장적인 구조 개혁 정책이 가구수준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

① 상품시장규제,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전반적인 (deep) 개혁을 행할 경우 가구수준에서의 불안정성 증가없이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

② 성장에 초점을 맞춘 **fiscal-consolidation** 전략은 미시적인 안정성을 희생해야 할 가능성이 큼

- fiscal-consolidation 전략이 이전지출을 줄이고 왜곡이 적은 재산세나 소비세를 증가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

3.2 상충관계와 보완성: 구조 개혁, 미시적인 불안정성, 소득분배

□ 구조개혁 정책이 미시수준에서 소득의 불안정성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①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함으로써(중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하위중간계층, 빈곤층 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

②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증가는 고용에 미치는 순기능이 임금의 분산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클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③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를 개선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worker reallocation을 감소시킴으로써 미시수준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

□ 실업급여 혜택의 축소는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소득 분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은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제도와 이전지출의 규모가 소득분배와 소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책변수임

○ 조세부담을 줄이고, 이전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성장 지향적 정책은 소득분배와 소득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는 소득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반면 이전지출은 소득분배 측면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정책변수임

○ 두 정책변수를 적절히 조합할 경우 보완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 논의 내용 >

- 많은 회원국들은 대체로 본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OECD 사무국의 기초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
- 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전반적인 개혁이 가계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하여 경험 및 분석이 부족함을 지적
 - 주요 결론인 역U자 형태의 정책효과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부족(아국, 영국, 프랑스)
 - 소득 변동성 이외에도 전반적인 개혁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인 안정성 성취 여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프랑스)
 - 전반적인 개혁의 경우 이행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하므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아국, 포르투갈)
- 많은 회원국들은 소득의 변동성을 가계의 불안정성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
 - 원활한 계층이동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소득의 변동성이 요구됨을 지적(영국, 미국)
 - 가계의 불안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가계 소득 증가율과 변동성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노르웨이, 스웨덴)
- 일부 회원국들은 실증 분석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소득 변동성의 원인에 따라 소비에 대한 시사점이 다르므로 소득 변동성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아국, 독일)
 -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소득의 변동성이 설명될 경우 소비자 금융의 발달 정도에 따라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독일, 멕시코)